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연구

尹 桂 變* · 郭 守 根* · 李 昌 雨*

《目 次》

I. 서언	2. 日本에서의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II. 기존의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	3. 英國에서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1. Antle and Demski[1991]의 연구	4. 獨逸에서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2. Dopuch and King[1991]의 연구	5. 싱가폴에서의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3. Read and Tomdzyk[1992]의 연구	
III. 우리나라의 公認會計士制度와 外部監查制度의 發展課程	V.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업무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우리나라 회계감사시장의 구조와 현황	1. 우리나라 會計法人的 實出額構成比
V. 각국의 공인회계사 업무영역의 현황	2. 公認會計士業務의 새로운 領域
1. 美國에서의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VII. 결론

I. 序 言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인회계사는 회계실무면에서 사법부의 판사에 비유될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생활에 중요한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불어넣음으로써 회계정보가 생명력을 갖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의 허용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인회계사에게 바라는 사회의 기대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감사서비스시장의 직접적인 수요자는 기업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 또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정부, 대출기관 등에서도 회계감사를 필요로 하지만 직접적인 수요자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감사서비스시장의 공급자는 감사인인 공인

* 서울大學 經營大學 教授

** 본 연구는 1995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임.

회계사이다. 정보분석가들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므로 감사서비스시장은 증권시장과 연관되며,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이용하는 서비스이용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직접 또는 정보분석가들을 통해 정보를 얻으므로 제품서비스시장은 감사서비스시장 및 증권시장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큰 반면, 사회의 요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 이제는 사회가 요구해야 하는 기대수준과 공인회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의 業務領域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봄으로써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제도와 외부감사제도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회계감사시장의 구조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의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싱가폴 등 각국의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에 관해 알아본다. 이는 각국의 공인회계사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의 개선점을 찾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싱가폴 등이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美國은 자유시장체제에서 공인회계사제도가 보다 자율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는 국가이고, 日本은 우리나라의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겪고 있거나 이미 겪은 국가이고, 英國은 관습법적 전통에서 공인회계사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이고, 獨逸은 대륙법적 전통에서 공인회계사제도가 회계법 등에 의해서 국가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이며, 싱가폴은 아시아에서 공인회계사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이므로 대표적으로 선택되었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끝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에 관하여 지적함으로써 연구를 끝맺고자 한다.

Ⅱ. 기존의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

1. Antle and Demski [1991]의 연구

미국의 대형회계법인들은 많은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은 감사와 경영자문서

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Antle과 Demski는 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를 한꺼번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대리 이론의 틀(agency framework)을 사용하여 분석적 연구를 행하였다. 즉, 현재의 담당감사인은 고객회사가 감사이외에 경영자문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피감사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제공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부산물로써 회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보상의 우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적 대리인 모형을 확장시켜 이러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다른 잠재적 원천을 이론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서비스를 계약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되므로(conjectured) 인한 마찰, 즉 계약상 마찰(contracting frictions)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분석의 틀에 의하면, 현재의 감사인 뿐만 아니라 고객회사도 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에 대한 경쟁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하여 고객이 외부원천으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감사인이 정보상의 우월적 지위는 부분적으로 상쇄되며 이에 따라 고객회사는 두가지 서비스를 한데 묶어 단일의 대가를 제공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감사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의 관계설정, 원가구조, 감사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모형, 그리고 단일기간모형의 설정 등에 대한 가정이 너무 제약적일 뿐만 아니라 반영하고자하는 회계제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모형의 설명력은 제한적이지만, 회계법인의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직관적인 견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¹⁾

이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얻게 되는 효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두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될 경우 감사인

(1)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객회사가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 각각을 별도의 계약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한데 묶어(bundling) 계약하는 것이 내생적 형태의 범위의 경제(endogenous form of economies of scope)를 가져온다. ② 회계감사서비스 수준의 하한을 정하는 규정은 고객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이에 따라 범위의 경제 효과를 줄이게 될 것이다. ③ 현재의 감사인의 정보와 상관관계가 있는 공공의 신호(public signal)가 존재한다면 최적해(first-best solution)를 얻을 수 있다. ④ 공공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규제가 부과된다면 차선의 해(second-best solution)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⑤ 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시장중에서 하나의 서비스시장의 규제는 구매되는 두가지 서비스의 양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 Dopuch and King [1991]의 연구

Dopuch와 King은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이들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실험연구(experimental market study)를 하였다.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를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을 경우 감사수행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Simunic [1984])이라는 오랜 논쟁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이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책지향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의 실험설계를 살펴보면, 총 12개의 시장을 설정하고 이중에서 6개의 시장은 감사인이 고객회사에 대해 감사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비규제시장으로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의 시장은 감사인이 고객회사에 대해 감사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만의 제공이 가능한 규제시장이다.⁽²⁾

이들의 연구는 동일한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효율성에 상대적으로 유의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시장에서와 같은 제약은 감사인들의 수입전략을 변화시키게 되어 효율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들이 회계감사보다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러한 감사산업구조의 변화는 규제적 변화로 인하여 제고된 감사인의 독립성의 이점이 상쇄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정책입안자가 유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시장에서 경영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회사가 제안하는 보수수준은 비규제시장에서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다. 또한 규제시장과 비규제시장에서 고객회사가 경영자문서비스를 위하여 감사인을 고용하는 빈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② 규제시장에서 감사서비스에 대하여 고객회사가 제안하는 보수수준은 비규제시장에서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규제시장에서 고객회사가 감사서비스를 위하여 감사인을 고용하는 빈도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③ 어떤 주어진 시장기간동안에 고객회사는 비규제시장에서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를 구입하는 빈도가 더 높다. ④ 경영자문서비스로부터 감사인이 얻은 정보량은 규제시장과 비규제시장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규제시장에서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은 규제시장에서보다 더 적은 검증을 한다. 그 이유로는 비규제시장에서 두가지 서비스를 모두 수행한 감사인은 감사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경영자문서비스로부터 얻은 정보를 회계감사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Read and Tomdzyk [1992]의 연구

Read과 Tomdzyk은 8대회계법인를 비롯한 미국의 대형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을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이외의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회계감사이외에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감사인과 고객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영향이 감사의 질이나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된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감사시장의 경쟁심화 및 복잡한 기업구조와 기술 혁신에 따른 감사환경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고객회사들의 좀더 광범위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형회계법인들은 업무영역을 계속 확장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영역확장의 근거로서는 감사인이 감사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피감사회사에 대한 충실햄 이해를 제고시킨다는 것과 이러한 이해가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감사시장이 점차 포화상태가 되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감사보수 및 감사서비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위당 마진이 높은 경영자문서비스로 업무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회계법인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도 언급되고 있다. 즉, 사회적 효익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감사인의 전문적 경영자문서비스를 비롯한 감사영역의 확대는 금지되거나 계속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1980년대 동안 AICPA에 속한 21개의 회계법인들이 제공하는 전문적 (세무 및 경영자문)서비스의 업무확대양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³⁾

(3) 분석결과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의 회계법인들에 의한 세무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등 비감사부분의 매출액구성비율과 그 성장을 즉 총공급의 변화를 파악하고, SEC등록법인들의 경영자문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동기간 동안의 변화양상을 비교한다. 이들 21개의 회계법인들은 SEC에 상장 또는 등록된 총 11,958의 회사에서 주된 감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8년에 SEC에 상장 등록회사의 95%에 달하는 매우 큰 비율이다. 1982년부터 1988년 동안에 각 회계법인들이 모든 고객회사로부터 획득한 비감사수익의 매출액 구성비율 및 그 성장률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비감사서비스로부터 수익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이들 회계법인들은 기타의 고객보다 SEC등록회사 고객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비감사수익비율이 더

미국의 대형회계법인들은 업무영역을 계속 확장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감사보수 및 감사서비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문서비스로 업무의 영역을 확대시켜서 수익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회계법인의 성장에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경영자문서비스를 비롯한 비감사서비스의 업무경쟁력의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밖에도 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도록 감사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III. 우리나라의 公認會計士制度와 外部監査制度의 發展過程

경제개발계획의 소요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고자 1962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였고, 1963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서류에 계리사의 감사증명을 의무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외부감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68년에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고, 1972년에 '企業公開促進法'이 제정되었는데 그 결과 1976년에 상장회사의 수가 300여개에 이르게 되었다. 상장회사의 증가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1973년과 1976년에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강화,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법령화,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부여 및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의 제도가 정비되었다. 한편 1976년에는 '金融團與信管理協定'이 제정되어 전전한 여신관리를 위한다는 목표하에 금융기관으

낮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SEC등록회사 고객으로부터의 경영자문서비스 수익비율의 성장을 이 전체고객으로부터의 성장을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그 수익비율 성장률의 중위수(median) 자체는 평균적으로 낮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8대회계법인보다는 그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두번째 계층을 구성하는 회계법인들의 집단은 상장기업에 제공한 제공한 경영자문서비스의 수익비율이 상당히 감소했으며,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세번째 계층을 구성하는 회계법인들의 집단은 상장기업으로부터의 경영자문서비스 수익비율의 성장률이 전체고객으로부터의 성장을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두번째의 분석결과는 1982년부터 1988년 동안의 SEC등록법인들의 경영자문서비스의 구매에 대한 변화양상을 비교한다. 분석에 의하면, 회계법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경영자문서비스를 구입한 SEC등록회사고객의 비율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8대회계법인조차도 SEC등록회사고객으로부터 많은 양의 경영자문서비스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비율이 감사수익의 25%이하이며, 그 성장률도 미미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1986년부터 1988년동안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서비스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SEC등록회사고객의 비율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회계법인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로부터 일정금액이상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출신청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980년대초 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건전한 기업풍토를 저해하는 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체질강화대책이 발표되었고, 그 일환으로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外監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상의 회계감사 관련규정은 축소되고, 금융단여신관리협정에 의한 회계감사가 폐지되어 강제화된 외부감사의 준거가 외감법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었다. 당시 외감법의 주요 골자는 감사대상회사를 자본금 5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3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정부의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감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감사인의 선임방식을 配定制에서 自由受任制로 전환하는 것 등이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은 1988년부터는 자산총액 30억원이상이었으며, 1990년도부터는 40억원으로, 그리고 1994년부터는 60억원으로 조정되어 대상기업의 자산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공인회계사제도 및 외부감사제도의 발전은 정부의 경제정책추진과정과 맥을 같이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진 각국의 감사제도의 발전이 민간경제부문의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수요에 의해 외부감사제도가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고, 정부의 법률제정에 의한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대중의 외부감사에 관한 이해부족을 낳았으며 외부감사의 확대에 많은 저항이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IV. 우리나라 회계감사시장의 구조와 현황

공인회계사란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1993년 12월 31일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으로 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하거나 국제세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외국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장은 外部監査市場, 經營諮詢市場 및 稅務關聯市場이며, 이 세 시장은 공인회계사업무의 3대 주요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현재 공인회계사와 중복되는 업무는 없으나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확대되면 다소

업무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규정을 잘 따르는지를 검토하는 **履行監査**(compliance audits)의 성격을 갖는다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는 주로 **財務諸表監査**(audits of financial statements)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감사대상기관은 63,000여개이나 감사원이 실제로 1년에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350여개 밖에 안되므로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관련부분은 공인회계사가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와 감사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앞으로 서로 협조해야 할 동반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경영자문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컨설팅회사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들은 자신의 업무영역으로 특화하고, 컨설팅회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특화하면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세무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둘사이의 업무영역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공인회계사업무의 주요 3대 영역외에도 공인회계사가 제공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최해 나가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정보생산자(기업, 비영리기관 등)가 생산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이 때 이해관계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증권분석가나 사채·주식·투자평가기관 등 정보분석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해관계자들은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인회계사는 감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통제를 받는데, 앞의 전과정을 규제하는 재무부나 증권감독원, 감사원, 세무서 등 규제기관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사의 대상과 이해관계자, 현재의 감사현황 및 현행 감사의 준거법에 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현재 자산규모 60억원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와 아파트 감사 등 일부는 시행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 관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 분류 및 수는 〈표 2〉와 같다.

즉, 1993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3,920개인데, 공익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외부감사는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이것은 이들이 사업목적별로 상이한 근거법과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소관부서도 교육부, 문화부, 보사부 등 여러부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여러 공익법인중 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고, 또 감사받을 여건도 성숙해져 있는

〈표 1〉 우리나라 감사의 현황

구분 감사대상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	현재의 감사현황	현행 감사의 준거법
• 주식회사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 자산규모 60억원 이상의 기업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학교법인 (사립학교)	• 교육부,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자, 대학평가기관, 부자	• 교육부감사, 재단감사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 (3) 필요시 감사결과를 교육부 장관에 보고 (4) 필요시 주무관청이 감사할 수 있음 (5)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는 감사중 한명을 공인회계사로 임명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19조
• 의료법인	• 의료보험공단, 환자	• 필요한 보고를 주무관청이 요구, 감사할 수 있음 (2) 재무관련정보의 보고내용은 없음	• 의료보험법 제49조
• 사단법인 재단법인	• 기부자, 법인종사자, 주무관청	•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 (2)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할 수 있음 (3) 필요한 때에는 업무·재무관리 및 회계를 감사할 수 있음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회복지법인	• 기부자, 법인종사자, 정부	• 감사 2인을 두되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장관이 추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아파트	• 아파트주민, 아파트관리 주체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자 중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 공동주택 관리령 제3조의 2(1993년 12월 최종개정)

(자료원: 〈공인회계사〉1993년 10월호 p.30 수정보완)

학교법인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學校財政公開의 現況

우리나라는 1992년에 홍익대가 처음으로 재정을 공개했으며 그 후 연세대, 건국대, 한

〈표 2〉 공익사업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학교	학술, 장학, 자선	사회 복지	종교	예술, 문화	의료	기타
법인 수	3,920	1,078	919	721	267	256	170	515
점유비	100.0	27.5	23.5	18.4	6.7	6.4	4.3	18.2

자료원:〈공인회계사〉 1993년 10월호 p.30

성대, 인재대, 영남대, 경희대, 명지대, 관동대 등이 학교재정을 공개하였다. 흥익대는 학교회계 자금운용계산서를 최초로 공개했고 연세대는 자금운용계산서, 연결대차대조표와 수익사업대차대조표 등을 공개하였으며 다른 대학들도 이와 비슷하게 공고를 하고 있다. 1994년 6월 현재 각 대학의 자발적인 결산공고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2) 大學들이 決算公告를 내는 理由

현재 일부 사립대학에서 강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결산공고를 내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위해서 결산공고를 낸다.

둘째, 수업료인상에 대해 현재 학생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학교재정을 공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학생들로부터의 불신을 씻을 수 있으며 적정한 수업료의 책정을 위해 학교재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재정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기부금의 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또한 출연한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사립학교의 재정비리, 부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학교법인들이 재정면에서의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1994년초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통해 사립대학지원을 차별화하는 요건 중의 하나로 결산공고여부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산공고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3) 學校法人에 대한 監查의 必要性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학정원이 500명 이상인 학교는 감사 중 한명을 공인회계사로 임명해야 하며, 학교법인이 받는 감사의 종류로는 교육부감사와 재단감사가 있다. 감사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시 감사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때로는 필요시 주무관청이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법인의 감사는 형식적이었으며 주로 내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대부분

이었다. 특히 대학의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다.⁽⁴⁾

대학들이 결산공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긴 하나 결산공고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대학들이 낸 결산공고는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결산공고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1994년 8월 19일 行政刷新委員會가 공익법인에 관한

〈표 3〉 대학의 결산공고 현황

공고일	학교명	공고내역	당기순손실(수익) 사업)
92. 6. 23	홍익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
93. 5. 8	연세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연결대차대조표, 수익사업대차대조표	7억 원
93. 6. 5	전국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수익사업대차대 조표, 법인회계 및 대학교회계 대차대조표	4억 2천만원
93. 7. 8	한성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
93. 7. 14	홍익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대차대조표	—
94. 5. 14	연세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 대차대조표 · 운용수지계 산서, 종합대차대조표, 수익사업회계 대차대조표	16억 3천만원
94. 5. 15	인제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연결대차대조표, 인제대의 주요 발전자료	69억 원 1천만원
94. 5. 28	영남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부속병원 대차대조표	7억 원
94. 5. 30	경희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연결대차대조표, 수익 사업회계 대차대조표	1억 2천만원
94. 6. 4	명지대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 대차대조표	—
94. 6. 4	관동대	법인 및 학교회계대차대조표	—

자료원: 주간매경, 1994. 6. 15

(4) 광운대 입시부정직후인 1993년 2월 당시 趙完圭교육부장관은 국회 教青委에서 “사립학교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기는 하였으나 바람직한 결정이다.

V. 각국의 공인회계사 업무영역의 현황

1. 美國에서의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1) 업무영역에 관한 일반 사항

미국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의 범위는 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⁵⁾ 이 규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전문적 회계서비스의 제공에 한정하고 비전문적 행위는 제공할 수 없도록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규에 의하여 규정한 회계사가 제공하는 독점적 전문회계서비스는 우리 나라의 공인회계사법 제1조의 직무규정과 비교해 볼 때 영리법인의 회계감사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것이외에도 다양한 재정내지 경영관련 서류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보증하는 업무로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장 본원적인 업무로서 회계감사(영리법인외에도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포함).
- ②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업무로서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의 작성이나 서명, 이밖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의 수립. (미국에는 세무사제도가 없으므로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영역의 마찰이 없음.)
- ③ 장부조직 및 기장대리업무의 일부로서 장부의 기록, 시산표의 작성 등의 업무. 더 나아가, 투자 및 중요한 경제적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는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을 비롯하여 회계감사의 개념이 확대된 업무영역으로 재무제표작성과 검토업무, 합의절차에 의한 보고, 확인서한, 증명업무, 약정이행검토서한, 내부통제구조의 감사, 업무감사, 내부감사, 성과감사 등이 있다.

(5)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1992년 3월 현재 공인회계사의 등록자 총수는 대략 305,000명이다. 미국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선 교육적 자격(대학 4년과정의 이수 또는 약간대학에서 영어 3년 및 수학 2년을 포함하여 동등한 과정의 시간의 이수)을 갖춘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회계사위원회에 등록하여 회계사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계사의 업무영역 중에서 회계감사대상회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으로, SEC등록공개회사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회사의 수는 약 15,000개 사이고, 그 밖에도 각 주의 증권법에서도 감사대상회사를 지정하고 있다.

④ 기타의 경영자문서비스(management advisory service; MAS)의 제공

이러한 회계사의 업무는 회계사법에서 정의된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수행될 때에만 회계사업부로 본다. 특히, 장부조직 및 기장대리업무의 일부로서 장부기록, 시산표의 작성, 진술서의 작성, 회계검사 또는 보고서의작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 시산표, 진술서 또는 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검사된 것으로서 담당회계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인회계사의 업무로서의 적용이 배제된다.

2)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관계

미국의 대형회계법인의 매출액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형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즉 세무서비스와 경영자문서비스의 비중이 국내의 회계법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세무사제도가 없으므로 세무서비스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만, 경영자문서비스의 비중이 큰 것은 미국의 회계법인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Read and Tomdzyk(1992)이다. 이 논문에서는 8대회계법인을 비롯한 미국의 대형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을 분석하여, 회계감사이외에 비감사업무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982년부터 1988년까지 AICPA에 속한 21개의 회계법인들에 의한 세무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등 비감사부분의 매출구성비율과 그 성장률 즉 총공급의 변화를 파악하면 다음의 〈표

〈표 4〉 미국의 6대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92)

	총수입 (\$ million)	감사업무	세무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국내합작 회계법인
AA&Co.	2,680	35%	20%	45%	안진
E&Y	2,281	51	23	26	영화
DTT	1,955	54	23	23	안건세화
KPMG	1,800	53	27	20	산동
C&L	1,567	58	18	24	삼일
PW	1,370	45	27	28	세동
평균	1,664.7	49.3	23	27.7	

*Public Accounting Report(미국 93년 8월호)

5)와 같다. 거의 대부분의 회계법인들이 비감사서비스로부터 수익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밖에도 다른 결과를 인용하면, 동기간동안 회계법인들은 SEC등록회사으로부터 감사보수에 대하여 경영자문서비스보수의 비율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영자문서비스를 전혀 구입하지 않은 SEC등록회사 고객의 비율이 개선되어 가고

〈표 5〉 21개 회계법인들의 매출액 구성비율과 성장률(1982년-1988년)

회계법인	경영자문서비스세		무서비스		합 계	
	평 균	성장률	평 균	성장률	평 균	성장률
PM	.18	3.8%	.26	0.7%	.44	1.9%
AA	.31	5.4 "	.22	1.5 "	.53	3.8 "
PW	.16	7.8 "	.22	1.8 "	.38	4.2 "
EW	.19	8.0 "	.21	1.6 "	.40	4.7 "
CL	.16	6.1 "	.21	0.8 "	.37	3.2 "
AY	.14	6.0 "	.26	2.0 "	.40	3.4 "
DHS	.11	9.8 "	.21	4.0 "	.32	5.9 "
TR	.18	10.8 "	.23	-1.5 "	.41	3.8 "
중위수		7.0%		1.5%		3.8%
GT	11	3.1%	.26	2.5%	.37	2.7%
LH	.22	9.8 "	.21	-0.8 "	.43	4.4 "
MHP	.12	5.8 "	.36	1.5 "	.48	2.6 "
BDOS	.05	9.8 "	.36	0.5 "	.41	1.6 "
KL	.19	15.2 "	.22	-4.3 "	.41	4.0 "
PKF	.23	4.9 "	.21	2.5 "	.44	3.7 "
SO	.03	20.1 "	.43	0.0 "	.46	4.5 "
중위수		9.8%		0.5%		2.7%
EIS	.23	-5.9%	.30	9.5%	.53	2.6%
OLV	.02	12.3 "	.33	0.5 "	.35	1.0 "
CRCH	.36	4.2 "	.21	0.8 "	.57	3.0 "
BKD	.15	7.5 "	.34	0.5 "	.49	2.6 "
PLMO	.18	-12.9 "	.18	5.6 "	.36	-1.0 "
CLGU	.06	5.8 "	.34	1.0 "	.40	1.6 "
중위수		5.0 "		.09 "		2.1 "

있지만,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Read and Tomdzyk [1992]).

요컨데, 미국의 회계법인들은 국내 회계법인에 비하여 업무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자문서비스로 업무의 영역을 확대시켜 수익력을 증진시켜야 회계법인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경영자문서비스를 비롯한 비감사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3) 회계감사의 개념이 확대된 업무영역

회계감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감사의 개념이 확대된 업무영역분야로는 증명업무(attestation engagement), 가상재무정보(pro forma financial information)의 보고, 미래재무정보(prospective financial information)의 보고, 재무제표작성과 검토업무(compilation and review), 내부통제구조의 감사(internal control structure audit), 약정된 절차에 의한 보고(report on agreed-upon procedures), 확인서한(comfort letter), 이행감사(compliance audit) 및 약정이행검토서한(compliance letter),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또는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선행감사(preemptive audit), 내부감사(internal audit),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있어서 감사대상(우리나라는 영리법인에 한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있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른 기준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관한 별다른 규정 및 개념정립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가 일반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업무영역 확대의 측면에서 이에 관한 미국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삼일감사론 참고).

(1) 증명업무

미국에서는 회사 및 개인의 다양한 진술서(representation)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증명업무(attestation engagemen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있어서 GAAS와 같은 준거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에 회계감사기준심의회(Auditing Standards Board)와 회계 및 검토용역위원회(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는 공인회계사가 증명업무를 수행할 때 준거기준으로서 증명기준(Attestation Standards, AT Section 100)과 증명업무기준서(Statements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 SSAE)를 발표하였으며, 1987년 12월에는 경영자문용역 집행위원회(Management Advisory Services Executive Committee)가 경영자문업무와 관련된 증명업무에 대하여 SSAE AT Section 100.71-76

을 발표하였다.

증명기준에서 정의하는 증명업무란 공인회계사등이 다른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서면주장의 신뢰성에 대한 결론을 표시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발행하기로 약정한 업무이다. 여기서 공인회계사등이란 공인회계사외에도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전문가(예를 들면, 경영자문요원)를 포함한다. 증명업무와 회계감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증명업무로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구조기술서, 시장에 출하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서, 투자성과에 대한 실적통계, 독점금지법 사례자료, 보험손해배상청구자료,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위한 노무관련 자료, 방송국의 시청율이나 청취율 자료, 신문사나 출판사의 발행부수 자료, 대학 등 학교법인을 위한 등록 및 수강자료, 공공요금인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원가자료, 생산성지수 등에 대한 조사및 검토와 그 보고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야에서와 같이 공인회계사등이 회사에게 조언이나 권고에 한한다면 증명업무로 보지 않는다. 증명업무는 회사의 특정한 주장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결론을 제시하는, 다시 말해서 증명을 하는 업무에 국한한다.⁽⁶⁾

이러한 수행기준에 입각한 증명보고서는 소극적 확신의 수준에서 검토나 약정된 절차에 기초한 결론으로서 주장된 사실이 준거기준에 위배되는 정보가 있었는지만을 기술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증명업무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법 제1조의 직무에서 이것을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회계감사의 일부로서 행하여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재정내지 경영관련 서류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보증하는 업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증명업무와 회계감사

구 분	증명업무	회계감사
1. 업무수행자	공인회계사등	공인회계사
2. 대 상	서면주장	재무제표
3. 업무수행기준	증명기준	회계감사기준
4. 판단기준	기설정된 기준 또는 서면상 기술된 기준	기업회계기준

(6) 일반적으로 증명업무는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증명보고서는 이용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증명받고자 하는 자와 이용자 사이에 약정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보고서는 당사자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약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증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한 관계자에게만 이용이 제한되도록 명시... • 일반이용목적의 기준이 이용되었다면 제시된 주장이 다를 수 있음을 명시).

(2) 가상재무정보에 대한 보고

가상재무정보(*pro-forma financial information*)란 과거에 가상의 거래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과거의 재무정보에 반영하고, 이로인한 중요한 효과를 표시한 재무정보이다. 1988년 9월에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심의회(Auditing Standards Board)는 가상재무정보에 대한 보고(*Reporting on Pro Forma Financial Information, AT Section 300*)에 대한 증명업무기준서(SSAE)가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공인회계사등이 가상재무정보를 보고함에 있어서 감사, 검토 또는 약정된 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재무정보의 구성요소는 과거의 실제 재무정보, 가상의 거래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상의 조정항목(은행차입, 고정자산의 투자 처분, 기업의 결합 등)이 있다. 즉, 가상재무정보란은 가상의 조정항목이 실제 재무정보에 적절하게 적용되어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가상재무제표는 회사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회사가 증권위원회 등에 제출할 여러 공식서류로서 요구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상사건으로서는 기업결합, 증자 및 기채 등 자금의 조달과 사용, 자본조달정책의 변경,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의 처분 등을 들 수 있다.⁽⁷⁾

(3) 미래재무정보에 대한 보고

미래재무정보(*prospective financial information*)는 재무예측(financial forecast)과 재무추정(financial projection)으로 구분된다. 재무예측이란 미래의 재무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최선의 지식과 신념하에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 미래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예측은 미래에 존재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가정에 기초하며,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특정 금액 또는 일

(7) 가상의 재무정보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 적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가상재무정보의 감사와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는 가상재무정보의 검토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재무정보의 감사: 가상재무정보의 감사에서는 가상거래의 중요한 효과를 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경영진의 가정이 제시된다. 이에 따라 가상의 조정항목은 경영진의 가정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상의 거래가 GAAP에 따라 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재무정보의 감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검사, 조회, 입회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가상재무정보의 감사보고서일자는 관련감사절차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재무정보의 감사보고서도 일반적인 감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제한이 가능하며, 이것은 실제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 ② 가상재무정보의 검토: 가상재무정보의 검토의 감사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질문이나 분석적 검토 등이 이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의 재무정보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의 수준도 소극적 확신에 국한된다.

정한 범위의 금액을 사용한다. 이에 반하여 재무추정이란 경영진의 최선의 지식과 신념에 일정한 가정을 추가하여 이러한 가정이 실현될 경우에 작성되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 미래재무제표를 말한다. 이러한 재무추정은 만약 어떤 가정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무엇인가 다시말하면 특정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러한 미래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의 타당성 검토, 정부보조금 신청, 공공시설이용에 대한 요율의 검토,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검토, 재무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 등에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에 있어서 미래재무제표의 작성자인 경영진이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인 재무분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회사의 경영진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를 통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미래재무정보이 적절한 가정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등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들은 정보의 수집이나 핵심요소의 확인, 가정의 설정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경영진을 보조한다. 이러한 보조역할은 미래재무제표의 감사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등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미래재무제표의 기본가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경영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재무제표의 이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 이용과 제한적 이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서 일반적 이용(general use)이란 미래재무제표의 작성자인 경영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대중에게 미래재무제표가 제시되는 것으로, 이들의 내용에 대해 그 작성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재무예측에 의한 미래재무제표를 들 수 있다. 제한적 이용(limited use)이란 미래재무제표의 작성자인 경영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한에서 이를 정보가 이용되는 것으로 재무예측이나 재무추정에 의한 미래재무제표 모두가 이용된다. 여기서 제3자란 정부규제 및 감독기관이나 은행등과 같은 기관으로, 해당되는 제3자는 작성된 미래재무정보의 여러 가정들을 질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할 수도 있다.

(4)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

미국에서는 SEC의 등록대상이나 각 주의 증권법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의 작성(compilation)과 검토(review)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회계 및 검토업무기준서(Statements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SSARS)이다.

① 재무제표 작성업무:

SSARS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업무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회계사가 재무제표작성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이를 표시하거나 그 작성업무를 철회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 검토업무:

SSARS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검토업무는 GAAP나 기타 회계기준에 입각할 때 재무제표가 중요한 수정사항이 없다는 한정적인 확신(limited assurance)을 제공하기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문 및 분석적 검토절차를 포함한다. 이것은 재무제표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계감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내부통제구조의 고려나 통제위험의 평가, 회계기록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확인, 검사, 입회 또는 조회 등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입증증거가 없으므로 의견표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는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시하지 않으며 단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수정될 것이 없다는 한정된 확신을 표명할 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검토업무는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에 입각한 업무와 유사하지만 이것은 상장회사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적이지는 못하다.

(5)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내부통제구조의 평가업무는 1988년에 발간된 회계감사기준서 제55호(SAS No.55)를 기초로 내부통제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로서, 회계감사 수행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취약점 등에 대한 건의서한, 이사회나 주주에게 제출하는 내부통제구조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외부규제기관이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통제구조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6) 약정된 절차에 의한 보고

약정된 절차(agreed-upon procedure)에 의한 보고업무는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서 제35호(SAS No.35)를 기초로 이해관계자 상호간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업무수행방법을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소극적 확신만을 제공하므로 해당 이해관계자만 한하여 이용을 제한한다.

(7) 확인서한

미국에서는 신규상장법인과 관련된 법규로서 1933년의 증권법, 1934년의 증권거래법,

1940년의 투자회사법 및 증권의 공개와 관련된 기타의 법규를 들 수 있다. 즉 SEC는 신규상장법인에 대해 사업설명서(*prospectus*)나 유가증권 신고서와 같은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인수계약의 일부로 신규상장법인과 관련하여 증권인수단의 인수업무에 제공되는 공인회계사의 보고서가 확인서한(*comfort letter*)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류는 등록서류(*registration statements*), 규칙 A와 D, 기타 면제규칙(*exemptive regulation*)에서의 공모안내서(*offering circulars*), 재무제표를 포함한 위임서류(*proxy statement*), 재무제표, 예측 및 가능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를 포함하는 경우, 증권의 제공서 및 SEC의 요구사항의 대상이 아닌 기타 공모서류(*public offering statements*)와 관련된 안내서, 등이 있다.

증권인수단들은 과거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SEC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것을 관례로 하였다. 즉 확인 서한은 SEC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SEC에 의해 부과된 책임하에서 행동하는 증권인수단에 의해 요구된다. 이러한 확인서한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매우 불확실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확인서한과 관련된 지침으로서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서 제49호(SAS No.49) “증권인수단을 위한 서한(*Letters for Underwriters*)”을 살펴보면, 확인서한은 일반적으로 등록서류의 유효일 직전에 요구된다. 확인서한에서는 기준일과 보고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은 증권인수계약에서 제시된 절차나 공시의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증권인수단이 확인서한상에 감사의견을 반복하거나 감사의견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표명할 것을 요청할 경우가 있으나 이를 수락하여서는 안된다.

(8) 이행감사

이행감사(*compliance audit*)란 어떤 조직이 규정된 정책, 절차, 법률 또는 계약 등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이다. 다시 말하면, 이행감사란 회사가 준수해야 할 제반법률이나 규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행감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나 채무약정서상 약정조건의 이행감사, 등을 들 수 있다. 이행감사중에서 이러한 정책, 절차, 법률, 계약 등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행감사가 재무제표의 감사절차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회계감사기준심의회(ASB)는 회계감사기준서 제53호 (오류와 불법행위의 적발과 보고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The Auditor's Responsibility to Detect and Report Errors and Irregularities*), 회계감사기준서 제54호 (피감사회사에 의한 불법행위(*Illegal Acts by*

Clients)). 회계감사기준서 제63호 (정부기관과 정부의 보조를 받는 회사에 적용가능한 이행감사 (Compliance Auditing Applicable to Governmental Entities and Other Recipients of Governmental Financial Assistance))과 같은 일련의 GAAS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GAAS이외에도 이행감사와 관련된 다른 외부의 법규로서 정부감사기준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과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이 있다.

4)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

AICPA는 다음의 비영리기관에 적용가능한 감사지침서를 발행하였다.

① 의료기관(Providers of Health Care Services)

② 대학(Colleges and Universities)

③ 자발적 보건복지기관(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④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State and Local Government Units)

GAAS는 비영리기관의 재무제표의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으로,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한 방안으로서 무료회계서비스제도를 회계사법 제5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회계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하에서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⁸⁾

(8) 각주의 회계위원회는 주의 관할 영역 내에서 무료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소지자가 통제하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은 첫해에는 \$50,000로 하고 매년 \$10,000를 초과하지 않게 회계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매년갱신될 수 있다. 계약은 회계직종내에서 무상지원자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하여 구조를 제공하는 능력과 책무를 강조하며 그 서비스는 주 전역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적 회계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비영리조직에 봉사하는 자발적 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프로그램 결과를 위원회에는 분기별로, 의회에는 매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밖에도 동법 제5172조(배정: 지급)에 의하여 제5170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집행하기 위하여 회계기금으로부터 위원회에 충분한 기금을 예산법에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 내부통제, 보고체계 및 이 체계를 운용하는 훈련, 인력 및 조세면제를 위한 신청서의 작성을 행하는 자발적 지원자의 공급. ② 비영리조직의 이사회 또는 수탁자에서 봉사하고 있는 회계사와 동 회계사가 부족한 이러한 조직과의 결합. ③ 회계학을 다루는 훈련워크숍과 세미나의 제공 및 목적된 비영리조직에 공통된 문제의 보고.

2. 日本에서의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1) 公認會計士業務와 稅理士業務의 差異

일본의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는 공인회계사는 첫째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재무서류의 감사 또는 證明을 하는 것을 업무로 하며, 둘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명칭을 이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재무서류를 작성하고 재무와 관계 있는 조사 혹은 입안을 하고, 또는 재무와 관계있는 상담에 응하는 것을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첫번 째의 업무는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이들 이외의 자는 첫번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위의 두번째의 업무는 MAS(Management Advisory Service)업무라고 일컬어 지는 것으로서 자격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기장대행업무를 실시한 기업에게 감사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MAS업무와 감사업무의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세리사법에서는 세리사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세무에 관하여 ① 세무대리, ② 세무서류의 작성, ③ 세무상담을 하며, 부수업무로는 재무에 관한 업무, 즉 재무서류의 작성 및 회계장부의 기장대행과 그 재무에 관한 사무를 업무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리사업무와 공인회계사업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세리사는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調査 및 質問權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명확한 점의 확인과 이상항목의 발견을 위해서 내부의 담당자에게 회답을 요구한다해도 담당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또 납세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세액을 자주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고 법률로 인정되어 있다. 세리사라는 직업은 납세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적 사명인데, 그 점에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사회적인 역할과 구별될 수 있다. 가령, 납세자의 입장인 기업을 두고, 언제나 기업의 측면에 유리한 감사증명서를 작성하는 공인회계사가 있다면 사회적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獨立性이라는 公正不偏의 태도이다.

2) 日本의 現行 監查現況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의 법정 회계감사제도는 상법에 의한 감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의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일본의 “주식회사의 감사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

률”(1974. 4. 2. 법률 제 22호)에 의하면 자본액이 5억 엔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최종 대차대조표의 부채부분에 계상된 부채액의 합계액이 2백억 엔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부채액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2백억 엔)에 도달한 경우에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1억 엔 이상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대장대신에게 보고하는 회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및 장외매매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의 해임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일본에서는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회계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된 회계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직무상 의무에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감사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비행을 저지른 때,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3) 非營利法人의 監查現況

일본에서 감사대상인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학교법인, 공익법인, 노동조합, 지방공공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정부출자법인 등이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중에서 현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은 국가 또는 都, 道, 府, 懸으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경상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學校法人 뿐이다. 그외의 법인은 임의감사로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여부는 해당법인의 자체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 실태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학교법인을 위주로 해서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감사현황을 알아보았는데, 주로 월간〈공인회계사〉 1993년 10월호를 참조로 하였다.

(1) 學校法人

1970년대초 학교법인은 수입의 정체와 차입금의 증가등에 의하여 재정기반이 매우 악화되었다. 따라서 사학관계자를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보조 및 응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보조 및 응자 등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보조금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 조달되므로 제3자인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따라

서 1976년부터 사립학교진흥법이 시행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충실히 확대되었으며 都, 道, 府, 懸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가 도입되었다.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학교법인감사가 제도화되기 이전인 1967년에 학교회계특별위원회(1978년 '學校法人委員會'로 개칭)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지침 등에 관하여도 감사실시초기에는 문부성 등으로부터 통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학교법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문부성의 양해를 얻어 발표하는 것이 많아졌다.⁽⁹⁾

또한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규칙에 따라 회원(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실시한 학교법인의 계산서류, 감사보고서, 감사실시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감사의 실정파악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된 계산서류 및 감사보고서의 표시상의 不備에 관하여 내부감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적절한 표시가 나타나는 회원에 대하여 회장명의의 공문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등 감사의 충실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법인감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규정액이상의 기부금납부를 조건으로 한 부정입학문제
- 교직원 수워 조작 등에 의한 보조금의 부정수급
- 수익사업의 신고누락
- 경영자 또는 경리담당자에 의한 횡령

또한, 최근에는 경영자에 의한 교육활동이외의 자금유용, 예를 들면 부동산 또는 주식 등에 과다한 투자를 했으나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못하고 학교법인의 경영자체가 위태롭게 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1984년 이후 都, 道, 府, 懸지사가 관할 하는 專修學校法人에 대하여도 보조금이 지급되어 그 액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상비보조금의 지급액이 1천만엔 이상인 전수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 감사를 도입하게 되었다.

(2) 公益法人

법적으로 감사제도는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무관청 등의 지도로 인하여 상당수의

(9)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폐지 또는 사문화된 것도 포함)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통첩:	25
학교법인위원회보고:	34
기타(실무문답집계 연구보고 등):	28
계	87

법인들이 공인회계사감사를 도입하고 있다고 추정된다.⁽¹⁰⁾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은 국가(성, 청) 및 현재 都, 道, 府, 懸관할의 약 2,000여개, 어떠한 형태로든 공인회계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4,000여개 정도가 된다고 보아진다.

(3) 労動組合

노동조합법은 각 조합이 매년 작성하는 계산서류에 대해 직업적으로 자격이 있는 회계 감사인에 의하여 감사증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감사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점과 일본의 노동조합조직의 특징인 중소기업의 종업원 조직에 의한 소규모조합의 비율이 높고 신탁회사(신탁은행)에서도 감사증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공인회계사감사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대기업의 종업원에 의하여 조직된 대규모의 조합과 연합체조합에서는 상당수 공인회계사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일본 공인회계사협회가 조합원 수 1,000명이상의 단일 조합 955개 및 연합체조합 63개, 합동조합 1,01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인회계사감사를 받고 있다는 회답은 319개 조합이었다.

(4) 地方公共團體

지방공공단체에는 지방 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제도가 있다. 근래 이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조사로는 1991년 12월 31일 현재 59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위원에 취임하고 있다.

3. 영국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

영국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감사인과 고객의 자유로운 감사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다. 회계 및 감사서비스, 세무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로 대별되는 회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으며, 각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전문능력에 의하여 그 경쟁력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세무사자격제도가

(10) 예를 들면 국가(성, 청)소관법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관여 사항은 1978년 9월 현재 다음과 같다.(총리부조사, 그 이후의 것은 불분명)

-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법인 587
- 공인회계사가 회계지도를 하고 있는 법인 508
- 공인회계사가 기타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183
- 공인회계사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는 법인 177

없으므로 세무서비스와 관련하여 세무사와의 업무영역 마찰도 있지 않다. 그러나, 회계사의 주된 업무로서 감사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법정회계감사가 행해진다. 이것은 **Principally Companies Act**, 1985 제235-237조, 제384-39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는 1990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로 공개회사 11,100사와 비공개회사 998,700사가 있다. 피감사회사에 대한 배정제도는 없음은 물론이다.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감사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단지 자발적인 기준하에서만 이루어 진다.

또한, 영국에서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단체(구세군, 장학단체등),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감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별한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단체마다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 상이하다. 즉 이들 비영리단체의 감사는 해당조직의 설립법규나 정관 및 이에 기초한 해당회계처리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행해진다.

다만, 영국의 최고감사기관은 국가감사국(National Audit Office)인데, 영국에서 비영리단체중 정부기관의 감사에 있어서 이 기관은 외부감사인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기관은 1983년에 제정된 국가감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국영기업과 민영화된 공사를 제외한 정부예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정부 및 정부유관기관에 대해 각각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들로 C&AG(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AG는 관계법규에 따른 계정이나 공공기금에 대해 그 적정성, 정확성 등을 감사한다.

이 밖에도 국영기업과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감사는 주무부장관의 지명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C&AG의 감사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및 합법성(법규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감사의 성격이 강하다면, 국영기업과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감사는 결산감사의 성격이 강하다.

영국에서 회계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으로는 개업시의 업무, 파산관재업무, 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업무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① 개업시의 업무영역

개업에 관한 규칙 제1장 제1조와 개업에 관한 이사회 선언 제1조에 따르면 회사 및 개인과 같은 공중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의 감독자로서 직접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회계서비스에는 회계감사 및 재무제표와 관련회계 재무정보에 관한, 파산, 세무자문을 포함한다. 개업에 관한 이사회선언 제2조

의 규정에 따르면 자문업무는 주요자문활동이 회계와 관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영국에서는 공인회계사는 별도의 세무사자격제도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영역의 마찰은 없다. 이 밖에도 개업에 관한 이사회선언 제3조에서는 한 회계사가 다른 개업회계사에게 고용된 경우라도 책임자로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업회계사로 본다.

② 파산관리업무

조례 제59조의 A에서는 파산관리업무는 별도로 파산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개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업무영역

이러한 업무는 개업면허가 없어도 된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독립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개업면허와 파산업무를 담당하는 파산면허는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연방과 EC의 회원국에서 독립적으로 개업하여 공인회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獨逸에서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독일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은 *會計士職業規定(Wirtschaftsprüferordnung)*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인회계사는 경영감사 특히 기업의 회계감사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며 감사의 수행과 결과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둘째 공인회계사는 위탁자의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현 규정의 범위에서 자문 내지는 대리할 수 있으며, 셋째 공인회계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경영자문활동을 할 수 있다.

위의 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외에도 동법 제43조 4항에서는 학문적인 기초를 둔 사실해석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감정활동과 법률자문법 제5조에 따른 법률문제의 해결 및 신탁업무의 수행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인회계사는 경제적인 업무에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조언하고 보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기술 및 법제도의 영역에 있어서 자유직업의 행사, 학문연구소에서의 활동과 대학교수로서의 활동, 신탁관계의 전속적인 활동이 일시적인 경우의 그 업무 및 자유로운 문학적 및 예술적 활동 등은 제한없이 행할 수 있다.

1) 法定監査

독일의 *企業法(business law)*은 회사의 규모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獨逸 商法(the German Commercial Code(HGB))의 제316조에 따르면, 중규모 또는 대규모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독일에서 회사의 규모를 분류하

는 기준은 다음 세가지 특성중에서 두가지 이상이 연속된 두기간이상의 대차대조표일에
계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표 7〉과 같다.

위의 기준은 회계감사 해당연도말 현재의 자산, 매출 및 종업원 수로 한다.

出版法(Publication Law)의 제1조에서도 유사한 의무감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독소유(sole proprietorships and partnerships) 법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규모는 앞서 언급한 독일상법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조직체중에서 법인 또는 주식회사가 아닌 조직체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 (the legal form of cooperations("Genossenschaft"))로 운영되는 일부의 은행과 보험회사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국가나 유럽의 많은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특별 감사규칙이 이들 회사의 지점들에게 적용된다.

이처럼 독일의 기업법은 법정감사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영리조직인지 비영리인지 를 구별하지 않고, 다만 法律的 實體의 類型(limited liability companies)과 그 規模만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많은 부분을 투자한 기업체의 경우는 독일 상법의 제267조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에 해당할 때 법정감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공공예산법(Public Budgeting Law("Haushaltsgounds tzege-setz"))이나 다양한 주의 규정에서 이들 기업체의 감사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

2) 非法定監査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감사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자발적인 기준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와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감사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대단히 많다. 일부의 경우는 각 경제실체의 협회규정(the Aticles of Association)에 의해 자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7〉

회 사	자산(백만 DM)	매출(백만 DM)	종업원 수
대규모기업	15.5 이상	32.0 이상	250 이상
중규모기업	3.9-15.5	8.0-32.0	51-250
소규모기업	3.9 미만	8.0 미만	50 미만

자료원: 삼일감사론, p.269

3) 稅務業務에 관한 사항

독일에는 회계업무분야에 公認會計士(CPA, Wirtschaftsprüfer)와, 公認帳簿監查士(certified accountant, vereidigte Buchprüfer) 및 稅務士(tax adviser, Steuerberater) 등 세 종류의 전문직이 있다.

이 중에서 공인회계사와 공인장부감사사만이 법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공인장부감사사는 중규모 법인(medium-sized GmbHs)만을 감사할 수 있다. 반면에 세무신고, 세무상담, 법정보고서의 제출 또는 세금관련소송에서 자료제출 및 의견개진(the representation in front of tax courts)과 같은 세무관련업무는 세가지 전문직 모두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공인장부감사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공인장부감사사가 세무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

독일에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학, 법학, 경제학 등의 관련과목을 대학에서 공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간의 실무경험을 쌓은 후에 세무사로서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이 시험을 합격하고 세무사회의 소(the Chamber of Tax Adviser(Steuerberaterkammer))에 등록한 후에야 비로소 세무사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장부감사사사이에 세무업무영역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 그러나 특히 회계법인에서 세무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前段階로 인식된다. 이것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경험기간이 세무사의 경우 3년인데 비하여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5년인데 기인한다. 또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있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관련분야의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사이에 업무영역의 마찰은 법률입안자가 법정감사를 다른 법적형태의 회사(other legal forms of companies)로 확대시키고자 할 때마다 일어난다. 법정감사를 GmbH & Co. KG로 확대하는 것은 세무사로부터 공인회계사에게로 업무를 이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4) 公認會計士의 非營利法人 會計監查制度 및 運營實態

독일에서는 공공복지의 추구 또는 정부주택정책의 수행기구로 인정된 주택사업체는 연말결산서 및 경영자보고서(management report)에 대해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정당은 수입 및 지출보고서를 감사받을 의무가 있고, 공제조합은 그가 소속된 공제조합협회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인으로는 해당 공제조합협회에 채용된 공인회계사가 선임된다.

독일에서 연방의 지분 참여 공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로 감사가 이루어 지는데, 먼저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말결산감사가 이루어지며, 관할 연방성장관에 의한 감사인의 보고서, 감사역회의 보고서 및 관계자료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연방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 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두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말정산감사가 있고, 감사국에 의한 항시적인 업무 및 계획준수감사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감사는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사례별로 조정된다. 그리고 연방은행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후 그에 기초하여 연방감사원이 감사한다.

독일의 공기업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이한 점은 일부 지분참여 공기업의 경우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말감사를 받은 후 연방 및 주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연말결산감사와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완전지배 공기업의 경우는 일부 지분참여 공기업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완전소유 공기업의 경우는 모두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말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 완전소유공기업의 경우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말결산감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독일의 공기업에 대한 연말결산감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5. 싱가폴에서의 公認會計士의 業務領域

싱가폴에서 공인회계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회사법(Companies Act)상의 모든 합명·합자·주식회사 및 외국법인의 지사를 감사한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의 필요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지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공인회계사는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업무를 한다. 또 싱가폴에서 회사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정부문서를 검증 및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대정부 신고, 보고, 인허가, 공증 등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폴에서 비회계적 감정, 증명업무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데, 특별히 법률로 변호

(11)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부검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994. 5.

사의 업무로 명시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관세사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싱가풀에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수행하며, 공인회계사는 기장대리업무, 경영컨설팅, 전산컨설팅, 해외투자자문업무 등도 수행한다.

싱가폴에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싱가폴에서는 한국의 법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공인회계사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정변론이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는 회계감사와 세무대리이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두 전문적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고유영역을 제외한 분야에서 교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싱가폴 내국세수입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Tax Planning이나 납세신고(Tax Returns)를 하는데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성실성에

<표 8> 싱가폴에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

업무영역	수행여부
• 회계감사	• 싱가폴 회사법상 모든 합명, 합자, 주식회사, 외국법인의 지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감사대상이 된다.
•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대정부 신고, 보고, 인허가, 공증 등 대리(한국의 법무사 업무)	• 회사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정부문서를 검증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 비회계적 감정, 증명업무	•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다.(법률로 변호사의 업무로 명시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는 수행할 수 없다.)
• 한국의 관세사, 변리사업무	•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다.
• 기장대리	• 당연히 수행한다.
• 경영컨설팅, 전산컨설팅, 해외투자자문	• 당연히 수행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부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싱가폴에서는 非營利法人도 주무관청의 인허가와는 별도로 회사법상의 회사설립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법체계상 모든 비영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고, 세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감사인의 규모와 고객회사의 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어떠한 제약도 없고 감사업무의 배정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도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계속적인 감사계약체결에 제약이 없으나 정부소유의 기관(government-owned-organization)과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s)의 경우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감사인이 순환되도록 하고 있다.

VII.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업무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會計法人的 實出額 構成比

먼저, 우리나라의 감사인조직중에서 합동회계사무소나 감사반에 비해 비교적 대형화 조직화되어 있는 會計法人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1992. 3-1993. 2)

법 인	회계감사		세 무		기 타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A	10,707	77.0	2,883	20.7	313	2.3	13,902
B	12,363	58.5	1,191	5.6	7,570	35.8	21,124
C	4,673	59.3	999	12.7	2,208	28.0	7,880
D	7,357	76.6	680	7.1	1,570	16.3	9,607
E	9,444	82.9	1,399	12.3	550	4.8	11,393
F	6,382	65.4	2,378	24.4	991	10.2	9,751
G	7,035	83.6	818	9.7	564	6.7	8,417
H	5,509	87.5	479	7.6	306	4.9	6,294
I	8,181	75.6	1,157	10.7	1,479	13.7	10,817
J	7,270	73.5	1,519	15.3	1,107	11.2	9,896
계	78,921	72.3	13,503	12.4	16,657	15.3	109,081

자료원: 증권감독원 회계감리국

여기서 기타를 구성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經營諮詢業務(Management Advisory Service)로부터의 수입을 말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매출액 중 회계감사와 세무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2.3%, 12.4%, 15.3%로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업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회계법인의 경우 전체 수입 중 회계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5%로 매우 낮고,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5.8%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감사와 관련된 업무이외에도 기타 업무가 전체 업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일년내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의 비중이 87.5%로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 감사대상법인의 회계연도가 12월말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회계법인의 업무가 특정기간에만 집중되어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비교목적으로 제4장에서 언급된 미국의 6대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국 6대회계법인의 매출액 중 회계감사와 세무 및 경영자문업무(MAS)의 비율은 각각 49.3%, 23%, 27.7%로 회계감사로 인한 수입이 전체수입의 반정도밖에 안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계법인 구성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과 공인회계사 수입원천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은 대부분 회계감사업무에 치중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특정기간에만 집중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업무가 없어 유휴노동력이 발생하는 등 회계법인의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회계법인과 미국 6대회계법인의 매출액 구성비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세무업무의 비율이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경우가 훨씬 낮다는 점인데, 이는 우리나라에는 미국과는 달리 세무사제도가 있으므로 세무업무시장의 많은 부분을 세무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무업무의 경우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물론 B회계법인과 C회계법인의 경우는 경영자문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6대회계법인만큼 높은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자문업무의 장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1996년부터 회계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데, 이 때 공인회계사의 업무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경영자문업무분야이다. 경영자문업무는 진입장벽이 없고, 외국의 회계법인 또는 전문컨설팅회사에 비해 국내 회계법인의 경쟁력이 낮으므로 시장참식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회계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과 국내사정에 밝은 면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업무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경영

자문업무의 장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2. 公認會計士業務의 새로운 領域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외에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있다.

1) 公益法人에 대한 監查

1993년 6월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3,920개인데, 이들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재정의 공개와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學校法人 중 상당수는 이미 자발적으로 학교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학교법인 회계처리기준(안)을 1994년 7월에 만들었고,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의 제정을 준비하는 등 학교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여건은 성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함으로써 수업료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증대시켜 기부금의 출연을 유도하고, 일부 사학재단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醫療保險組合은 공익단체로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해관계인이 다수 국민이므로 의료보험조합회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조합에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病院이 국민의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병원, 특히 대규모 병원 또는 대학병원들의 수입 및 예산은 매우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재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학병원은 사립학교재단의 비리 및 의료보험조합과의 문제가 얹혀 있어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 宗教團體, 學術財團, 奨學財團 등도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공익법인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監查院과의 業務協調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감사대상기관은 63,000여개이나 감사원이 실제로 1년에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350여개에 불과하다. 즉, 감사원업무의 과다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정기적 감사실시가 어렵다. 또한 감사원감사는 *履行監査*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계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감사원이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거나, 감사원과 공인회계사가 함께 감사를 하거나, 감사원이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여 감사를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감사원과 공인회계사가 업무협조를 한다면 감사원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자원배분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商法上 會社의 監事資格의 強化

우리나라 *商法* 제409조부터 제415조까지는 *監事*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즉,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상법상 감사는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감사에 임명되는 사람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3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친인척이 선임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사회전체적으로도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이다. 그러므로 상법상 감사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임명하여 감사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업무영역외에도 공인회계사가 필요한 업무영역은 많다. 예를 들어 국회에 의한 *國政監査業務*중 회계감사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활용하고, 각종 *法院提出書類*에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法人의 設立時나 會社整理節次時 調査委員*에 공인회계사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VII. 결 론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감사시장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業務領域*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서비스시장의 현황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감법에 의해 자산규모가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감사인의 선정방법은 *自由受任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익법인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지 않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일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결산공고를 내고 있으며 대학들의 이러한 결산공고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산공고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학들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고함으로써 수업료인상문제와 관련하여 수업료의 적정성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학교재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고 학교외부로부터의 기부금의 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다. 대학외에도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각종 공익법인들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고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신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美國, 日本, 英國, 獨逸, 싱가풀의 업무영역, 보수체계, 손해배상책임을 비교·분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특히 싱가풀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변호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법인의 수입은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회계감사업무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회계감사업무이외에 세무관련업무나 경영자문업무이다. 또한 회계감사업무에서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및 감사원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상법상 회사의 감사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업무 중 회계감사업무분야에 공인회계사가 참가하거나, 각종 법원제출서류에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법인의 설립시나 회사정리절차시 조사위원에 공인회계사들이 참가함으로써 각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현

1. 국내문헌

〈서적〉

삼일회계법인, 삼일감사론, 삼일회계법인, 1992.

조익순, 이만우, 회계감사, 박영사, 1992.

〈논문〉

- 이만우, “회계감사의 수요와 공급”, 한국공인회계사회, 1992.
- 주인기, “외부감사보수체계 개선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1992.
- 이철송, “주식회사설립의 건전화를 위한 외감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1992.

〈기타〉

-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증권관리위원회 승인, 1994년 4월 15일 최종개정.
-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 한국공인회계사회, 1992년 9월 8일 최종 개정.
- 한국공인회계사회, 월간 공인회계사, 1993년 9, 10, 11월호, 1994년 2, 6월호.
- 공인회계사법 위반사건 사례집 (제 1집), 한국공인회계사회, 1994년 2월.

2. 외국문헌

1) 미국

〈서적〉

- Choi & Muller, *International Accounting*, 2nd ed. Prentice-Hall, 1992.
- Abdel-khalik Solomon, *Research Opportunities in Auditing*,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8.
- Carmichael & Willingham, *Perspectives in Auditing*, McGraw-Hill, 1985.

〈논문〉

- Antle Rick and Demski Joel S., “Contracting Frictions, Regulation, and the Structure of CPA Firm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1991).
- Deangelo Linda E.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81).
- Dopuch Nicholas and King Ronald R., “The Impact of MAS on Auditors’ Independence: An Experimental Markets Stud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1991).
- Read J. William and Tomczyk Stephen, “An examination of Changes in Scope of Services Performed by CPA Firms”, *Accounting Horizons* (September 1992).

2) 일본

〈서적〉

守屋俊晴, 監查의 實踐技法, 中央經濟社, 1992.

野村秀和, 企業會計, 青木書店, 1991.

鈴木 豊, 公會計監查의 基準과 手續, 中央經濟社, 1992.

田中 弘, 英國의 會計制度, 中央經濟社, 1993.

監查法人 도오에쓰, 海外會計實務 핸드북, 同文館, 1986.

〈기타〉

日本公認會計士協會, 公認會計士報酬規定, 1992년 7월 23일 최종개정.

日本公認會計士協會, 法定監查의 標準報酬規定, 1992년 3월 최종개정.